
第 4 章

1995年度 會議運營

第1節 第32回 臨時會

第2節 第33回 臨時會

第3節 第34回 臨時會

第4章 1995年度 會議運營

第1節 第32回 臨時會

第32回 青陽郡議會(臨時會)는 韓鐵熙議員外 4人으로부터 集會要求가 있어 地方自治法 第39條 第2項의 規程에 의하여 開會되었다.

1. 第1次 本會議

1995年 2月 14日 午後 2時에 開議된 第1次 本會議에서는 第32回 青陽郡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件. 郡政에 관한報告가 上程되었다.

가. 第32回 青陽郡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件

第32回 青陽郡議會 臨時會의 會期는 2月 14일부터 2月 23일까지 10日間으로 할것을 議決하였으며 議事日程은 다음과 같다.

◆ 第32回 青陽郡議會(臨時會) 議事日程 ◆

月 日	次 數	附 議 案 件	備 考
1995. 2. 14 (火) 14 : 00	1	開 會 式 1. 第32回青陽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郡政에 관한報告(總括報告)	
2. 15 (水)	2	1. 郡政에 관한報告(繼續) 2. 一般案件處理	內 務 課
2. 16 (木)	3	1. 郡政에 관한報告(繼續) 2. 休會의件	文化公報室 財 務 課 社 會 課 2. 17 (1일간)
2. 17 (金)		休 會 (郡政報告大會)	
2. 18 (土)	4	1. 郡政에 관한報告(繼續)	社會振興課 環境保護課
2. 19 (日)		公 休 日	

月 日	次 數	附 議 案 件	備 考
1995. 2. 20 (月)	5	1. 郡政에 關한 報告 (繼續)	企 劃 室 課 産 業 經 濟 課 地 域 防 衛 課
2. 21 (火)	6	1. 郡政에 關한 報告 (繼續)	建 設 課 保 健 醫 療 院 所 農 村 指 導 課 都 市 課
2. 22 (水)	7	1. 郡政에 關한 報告 (繼續) 2. 一 般 案 件 處 理	山 林 課 家 庭 福 祉 課
2. 23 (木)	8	1. 一 般 案 件 處 理	

나. 郡政에 關한 報告

1995年度의 主要郡政計劃에 대하여 郡政報告大會 報告에 앞서 企劃室長으로부터 總括報告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質問과 答辯이 있은후 午後 3時에 散會하였다.

2. 第2次 本 會 議

1995年 2月 15日 午後 2時에 開議된 第2次 本會議에서는 郡政에 關한 報告, 靑陽郡行政機構設置條例案, 靑陽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案, 休會의 件이 上程되었다.

가. 郡政에 關한 報告

執行機關 각 실과별 郡政에 關한 報告로 內務課의 報告가 있었으며 報告內容에 대한 간단한 質問과 答辯이 있었다.

나. 靑陽郡行政機構設置條例案

- 提出年月日 : 1995. 2. 11 ○ 提出者 : 靑陽郡守
- 提案理由

地方自治團體의 行政機構와 定員基準等에 관한 規程(大統領令 제14480호 94. 12. 31)에 의거 靑陽郡 行政機構設置에 대하여 條例로 制定 地方組織의 자율관리능력 제고 및 지역실정에 맞는 組織을 運營코자 함.

○ 處理 結果

本會議 審議結果 原案대로 可決하고 1995. 2. 17. 執行機關에 移送하였으며 條例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에 두는 실·과의 행정기구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과의설치) 청양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를 둔다.

제3조(기획실) 기획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 통제
2. 기본운영 계획수립과 심사분석
3. 법제 및 소송업무
4. 예산편성 및 운용
5.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6. 통계조사
7. 그밖의 기획, 예산, 법무 및 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제4조(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보계획의 수립실시
2. 언론 공보자료의 수집 편찬
3. 군정계몽 선전 및 보도
4. 문화재의 보호관리

5. 출판 향교 사찰관리 및 종교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단체의 지도 육성
7. 관광선전 및 개발
8. 공보매개체의 보급 육성
9. 해외교포와의 유대
10. 반공계몽
11. 군민대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제5조(내무과) 내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
2. 직제, 정원, 인사
3. 복무단속
4. 문서수발 통제 및 편찬보존
5. 보안업무
6. 공무원 교양과 복리
7.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8. 행정구역 개편
9. 사무관리 개선
10. 선거 및 국민투표
11. 주민이동, 관서이동, 비상대비 지방조직업무
12. 호적, 주민등록, 행정서사, 소개영업
13. 군행정의 감사
14. 공무원 비위조사
15. 여론조사 및 정보수집 분석
16. 바르게살기운동 기획조정
17.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18. 창구민원의 즉결처리

19. 행정안내 및 민원상담
20. 민원사항의 열람
21. 민원서류의 수발통제
22. 민원업무의 연구 및 발전
23. 자동차 등록업무
24.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지도
25. 행정규제 완화 및 쇄신 주관
26.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 운영
27. 청내단속과 그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6조(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마을 운동에 관한 종합계획 조정 추진
2. 새마을 지도자 관리
3. 새마을 교육
4. 광고물등 설치허가 및 관리
5. 체육공원 조성
6. 전국토의 공원화 운동추진
7. 청소년 대책업무
8. 건전생활진흥에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9. 체육진흥 지원 업무
10. 자연보호운동
11. 도의 새마을운동 및 국민정신 운동 추진
12. 오지개발 및 소도읍 정비
13. 그밖에 새마을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재무과) 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위탁징수
2. 세외수입 부과징수
3. 세입금 수납관리 및 결산

4.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5. 물품구입 및 출납보관
6. 군 금고의 감독
7. 공채, 국채, 금융
8. 국민저축 및 영선관리
9.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10. 부동산 평가업무
11.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업무(국토이용관리법 제3조의2)
12. 지적공부관리
13. 토지조사 및 지적측량
14. 토지분할허가에 관한 사항
15. 부지증명 발급 업무
16. 그밖에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사회과) 사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호, 후생대책
2. 위생업소의 인허가 및 신고업무의 지도감독
3.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사업, 재산상황의 검사감독
4. 주민의료보험 업무
5. 지역의료보험료 징수, 독려 지원
6. 기타 지역 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 및 협조지원
7. 그밖에 사회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지도
2. 환경영향 평가지도
3.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4. 오물처리허가 및 지도단속
5. 청소업무

6. 그밖에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10조(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2. 부녀·아동 복지법인의 지도 감독
3. 부녀·아동 후생시설의 운영지도 감독
4.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5. 부녀자의 직업보호
6. 윤락여성의 선도보호
7. 아동 복지증진
8. 부녀·아동상담 및 상담소 운영지도 감독
9. 부랑아 방지
10. 고아, 기아, 부랑아, 정신박약아의 보호
11. 노인복지대책
12. 가정의례준칙 지도
13.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14. 그밖에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

제11조(산업과) 산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지의 보존, 이용 및 개량에 관한 사무
3. 식량작물의 증산 장려 및 농산물 유통 및 가공에 관한 사무
4.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추진
5. 비료, 농약, 농기구등 농업자재의 수급조절
6. 영농 기계화 추진 및 농업경영 합리화
7. 농작물 병충해 방제 및 재해대책
8. 양곡의 관리, 수급조절 및 가공등에 관한 업무
9. 정부양곡 관리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 지도, 감독
10. 잠업증산 및 기술보급

11. 특용 및 원예작물의 증산장려
12. 가축의 증식, 개량, 위생 및 공수의 감독
13. 수자원 보호 및 수산물 증식등 수산업무에 관한 사항
14. 도축장 및 가축시장관리
15. 그밖에 산업행정에 관한 업무

제12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경제 및 상공운수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대책
3. 수출진흥과 과학기술진흥
4. 연료, 전기및 계량기에 관한 사항
5. 시장개량 및 관리
6. 물가조사 및 정찰제 실시에 관한 사항
7. 광공업 등록 및 중소기업 육성지도
8. 농공단지조성 및 육성지도
9. 공산품 품질관리
10. 노동대책
11. 운수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성
12. 운수사업의 지도 감독
13.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지도 감독
14. 담배 소매업에 관한 업무
15. 주차장(노상·노외)관리
16. 그밖에 지역경제 및 상공 운수에 관한 업무

제13조(산림과) 산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야내 치산계획 수립 실시
2. 양묘 및 조림사업 시행지도
3. 사방사업
4. 임야단체 및 제재시설 감독

5. 임업기술 개량 보급
6. 산림재해 방지
7. 임산물 수급조절 및 증산
8. 산림보호 부정임산물 단속
9.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단속
10. 가로수 식재관리
11. 자연휴양림 조성과 지정신청
12. 임야 매매증명 발급관계 업무
13. 임도시설
14.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 육성
15. 임업진흥촉진 지역의 개발
16. 산불예방등을 위한 금지행위(오물, 쓰레기 투기 및 취사행위등)
17. 그밖에 산림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건설과)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교량 개발계획 수립 실시
2. 치수사업 계획수립 실시
3. 도로·하천에 관한 허가 및 공사감독
4. 수자원개발
5. 재해예방 및 복구
6. 농지개량 및 농업진흥시설
7. 개간, 경지정리사업의 시행인가 및 농업용수개발
8. 정주권개발에 관한 업무
9. 토목공사 시행 및 감독
10. 건설공사용 자재 및 중기관리
11. 용지매수 보상
12. 법질서 확립과 경제안정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도단속업무
13. 공원관리 업무

14. 그밖에 건설업무에 관한 사항

제15조(도시과) 도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 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
3. 도시계획 및 구획정리
4.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물 단속
5. 국민주택 및 주택자금 관리
6. 주택건설 및 건축사 건축업자 단속
7. 공원 녹지의 조성관리
8. 상·하수도
9. 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10. 택지조정
11. 주택설계도서 및 자재보급등 주택행정
12.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불법건축물 단속허가
13. 그밖에 도시개발행정에 관한 사항

제16조(민방위과) 민방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방위 계획 수립
2. 민방위대 조직 편성 동원
3. 민방공계획 수립
4.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5. 민방위 교육훈련 및 계몽
6. 비상대책 업무(단, 주민이동, 관서이동, 비상대비, 지방조직업무는 제외)
7. 병무업무
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용
9. 공익근무요원 전담관리
10. 그밖에 민방위, 병사에 관한 사항

제17조(계의 설치및 사무분장) ① 실·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②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靑陽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案

○ 提出年月日：1995. 2. 11 ○ 提出者：靑陽郡守

○ 提 案 理 由

地方自治團體의 行政機構와 定員基準등에 관한 規程에 의거 지방조직의 자율관리 능력제고 및 지역실정에 맞도록 靑陽郡行政機構設置條例를 制定코자 하는 것임.

○ 處 理 結 果

本會議 審議結果 原案대로 可決하고 1995. 2. 17. 執行機關에 移送하였으며 條例案은 다음과 같다.

靑陽郡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靑陽郡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靑陽郡의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본 청：198명
2. 직속기관：102명
3. 사 업 소： 6명
4. 읍 · 면：226명

제3조(직급별 정원의 규정) 군본청·직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청양군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3. 第3次 本會議

1995年 2月 18日 午前 10時에 開議된 第3次 本會議에서는 郡政에 관한 報告가 上程되었다.

가. 郡政에 관한 報告

第2次 本會議에 이어 執行機關 各 실과별 郡政에 관한 報告가 進행되어 社會振興課, 環境保護課의 報告와 이에 대한 質問과 答辯이 있었으며 11時 46분에 散會하였다.

4. 第4次 本會議

1995年 2月 20日 午前 10時에 開議된 第4次 本會議에서는 3次 本會議에 이어 郡政에 관한 報告와 議事日程 變更의件, 現場踏查의件이 上程되었다.

가. 郡政에 관한 報告

第3次 本會議에 이어 企劃室, 産業課, 家庭福祉課 所管에 대한 郡政報告가 계속되었다.

나. 議事日程變更의件

議政活動에 참고하기 위하여 現場踏查를 위한 議事日程變更의件이 上程可決되었다.

다. 現場踏查의件

家庭福祉課所管 業務報告中 공설공원묘지설치 및 정비계획에 따른 현장을 답사하여 議政活動에 참고키위한 現場踏查의件이 議長提議로 上程되었으며 午後 1時 24分 散會하였다.

5. 第5次 本會議

1995年 2月 21日 午前 10時 10분에 開議된 第5次 本會議에서는 郡政에 관한 報告가 계속 上程되었다.

가. 郡政에 관한報告

第4次 本會議에 이어 地域經濟課, 社會課, 山林課, 建設課, 民防衛課 소관에 대하여 郡政에 관한 報告 청취와 이에 대한 質問·答辯이 있었으며 午後 2時 55분에 散會하였다.

6. 第6次 本會議

1995年 2月 22日 午後 2時 10분에 開議된 第6次 本會議에서는 郡政에 관한 報告, 靑陽郡郡民大償條例中改正條例案,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이 上程되었다.

가. 郡政에 관한報告

第5次 本會議에 이어 계속된 郡政에 관한 報告는 文化公報室, 財務課, 保健醫療院의 報告와 이에 대한 質問·答辯이 있었다.

나. 靑陽郡郡民大償條例中改正條例案

- 提出年月日 : 1995. 2. 11 ○ 提出者 : 靑陽郡守
- 提案理由

靑陽郡郡民大償條例 第3條1項에 規程된 수상부문에 애향부문을 신설하여 출향인사로서 地域發展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애향심이 뚜렷한자에 대하여

수상범위를 확대코자 함.

○ 處 理 結 果

本會議 審議結果 原案대로 可決하여 1995. 2. 23. 執行機關에 移送하였으며 上程된 條例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군민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애향부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 靑陽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提出年月日 : 1995. 2. 14 ○ 提出者 : 靑陽郡守

○ 提 案 理 由

公有林野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하여 條例 체계상 혼란이 없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산림법상의 國有林野와 동일하게 요율체계를 정비하고 公有林野管理特別會計 관련 條項을 삭제하여 一般會計로 통폐합하기 위함.

○ 處 理 結 果

本會議 審議結果 原案대로 可決하여 1995. 2. 23. 執行機關에 移送하였으며 上程된 條例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료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4조, 제35조,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第7次 本會議

1995年 2月 23日 午前 10時 30分에 開議된 第7次 本會議에서는 계속해서 郡政에 관한 報告가 上程되었다.

가. 郡政에관한報告

第6次 本會議에 이어서 都市課, 農村指導所를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중 郡政에관한 報告를 마치고 午前 11時 29分 散會하였다.

第2節 第33回 臨時會

第33回 靑陽郡議會(臨時會)는 趙炳安議員外 5人으로부터 集會要求가 있어 地方自治法 第39條第2項의 規程에 의하여 開會되었다.

1. 第1次 本會議

1995年 4月 11日 午後 2時에 開議된 第1次 本會議에서는 第33回 靑陽郡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件, 議員任期延長에 따른 議長團任期에관한件, 休會의件 이 上程되었다.

가. 第33回 靑陽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第33回 靑陽郡議會 臨時會의 會期는 4月 11日부터 4月 20日까지 10日間으로 할것을 議決하였다.

◆ 第33回 青陽郡議會 (臨時會) 議事日程 ◆

月 日	次 數	附 議 案 件	備 考
1994. 4. 11 (火) 14 : 00	1	開 會 式	
		1. 第33回青陽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95主要事業場現地踏查計劃의件 3. 議員任期延長에 따른議長團任期에 관한件 4. 休會의件	
4. 12. ~ 4. 17.		休 會 (6日間)	-주요사업장 답사 -4.13춘추대 의제참석
4. 18.	2	1. 一般案件處理	
4. 19.	3	1. 郡政에 관한質問	
4. 20.	4	1. 郡政에 관한質問	

나. '95主要事業場現地踏查計劃의件

1995年度에 시행되고 있는 군내 主要事業場에 대한 現地踏查를 통하여 事業이 計劃대로 차질없이 進行되고 있는지를 確認하고 推進狀態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 촉구하며 郡民의 여론수렴등 議政活動資料의 수집으로 議會運營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군내 41개 事業場을 議員 全원이 답사기로 可決하였다.

다. 議員任期延長에 따른 議長團任期에 관한件

地方自治法の 改正(1994. 12. 20)에 따른 現行 郡議員의 任期가 1995. 4. 15에서 1995. 6. 30까지 77일간 연장되었으나 地方自治法 第42條第2項에서 規程하고 있는 議長과 副議長의 任期에 대한 연장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

任期에 관한 件을 上程한바 李起甲議員으로부터 현행 議長團을 그대로 유임토록 하자는 동의를 성립되어 거수표결한 결과 滿場一致로 可決되었다.

라. 休會의件

主要事業場에 대한 現地踏査와 4.13춘추대의제 참석을 위하여 4.12부터 4.17까지 休會기로 可決하였으며 午後 2時 29分 散會하였다.

2. 第2次 本會議

1995年 4月 18日 午後 2시에 開議된 第2次 本會議에서는 靑陽郡衛生環境事業所設置條例案外 5件的 條例案이 上程되었다.

가. 靑陽郡衛生環境事業所設置條例案

○ 提出年月日 : 1995. 4. 10 ○ 提出者 : 靑陽郡守

○ 提案理由

地方自治法 第105條의 規程에 의거 衛生處理場의 業務를 효율적으로 遂行하고자 靑陽郡 衛生環境事業所設置에 대하여 條例로 制定코자 함.

○ 處理結果

本會議 審議結果 原案대로 可決하여 1995. 4. 20. 執行機關에 移送하였으며 上程된 條例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위하여 청양군위생환경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청양군 청양읍 정좌리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2. 분뇨의 위생적 처리방법 연구 발전
3.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그밖의 분노의 위생적 처리에 관련되는 사항

제4조(소장)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환경주사(또는 지방기계주사 지방화공주사)로 보한다.

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업소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靑陽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提出年月日 : 1995. 4. 11 ○ 提出者 : 靑陽郡守

○ 提 案 理 由

본격적인 地方自治時代를 맞아 지속적인 지방세수의 확보관리와 세무행정 수행체계를 개선하여 지방세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기구인력을 정비 보강하고 소속공무원의 定員을 條例로 制定코자 함.

○ 主 要 骨 子

• 관리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증감조정

정원관리기관별	당 초	조 정	증 감
군 본 청	198	198	+ 5 △ 5
사 업 소	6	16	+ 10
읍 면	226	221	△ 5

○ 處 理 結 果

本會議 審議結果 審議 保留되었다.

다. 靑陽郡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提出年月日：1995. 4. 14 ○ 提出者：靑陽郡守

○ 提 案 理 由

UR농촌지원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公有財產 매각시 분납 가능사항을 추가 規程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등 공유지 대부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 處 理 結 果

本會議 審議結果 原案대로 可決하여 1995. 4. 20. 執行機關에 移送하였으며 上程된 條例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매각”을 “사용허가”로 하고 제11조제3항제1호중 “직할시이상지역”을 “특별시·광역시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중 “3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22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하며 제4호 다음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9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천재·지변·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제1항 단서중 “새마을사업에”를 “취락개선사업에”로 하고 제2항중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 과세시가표금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금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제37조제4항 단서중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를 “공유임야관리”로 한다.

제39조의2중 “영 제95조제2항제24호”를 “영 제95조제2항제25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 靑陽郡共同給水施設維持管理條例改正條例案

○ 提出年月日 : 1995. 4. 14 ○ 提出者 : 靑陽郡守

○ 提案理由

상위법령인 공중위생법 第31條의 相關규정이 삭제되고 간이상수도의 相關등에 關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도록 수도법 第32條第2項의 規程에 따라 現行 條例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에 일치시키고 管理運營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現行 條例를 전면 改正코자 함.

○ 處理結果

本會議 審議結果 修正 可決하여 1995. 5. 8. 執行機關에 移送하였으며
條例案 및 修正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청양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양군간이상수도시설관리운영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관리되는 간이상수도를 말한다.
2. 시설단위라 함은 1개의 시설을 사용하는 마을 또는 지역단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시설로부터 급수혜택을 받는 시설단위 주민중 가구주(또는 세대주)를 말한다.
4. 유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들로 구성된 시설단위 또는 마을단위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설치운영

제3조(위원회의 설치) 시설물의 사용자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물의 유지·관리
2. 급수의 위생관리
3. 기타 급수와 관련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2인
3. 위원 5인 이상

제6조(위원의 선출) ① 위원회의 위원은 사용자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감사)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 감사 1인 이상을 둔다.
- ② 감사는 사용자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감사는 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으며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관리인의 임명) ① 위원회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등을 위하여 시설관리 책임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한다.
- ③ 위원회의 기금의 범위안에서 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 주어야한다.
- ④ 관리인의 보수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관리인의 임무) ① 관리인은 시설물의 운용, 보수, 소독실시등 급수시설

의 운용·관리 일체를 담당한다.

②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운용·관리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표1의 점검기록부에 기록, 비치 하여야 하며, 이를 매분기별로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별표2의 환경조사표에 의한 환경조사를 매월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오염원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비의 징수·관리

제12조(관리비의 징수) ① 위원회는 관리비(전기료, 관리인보수,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로 한 비용)를 징수한다.

② 관리비는 위원장 책임하에 지출하고 관련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비 운영규정) ① 위원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등 관리비의 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리비 운영 세부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위원회는 시설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인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관리비의 체납) 위원회는 관리비를 체납한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일정액의 가산금을 추가 징수할수 있다.

제4장 시설물의 보수

제16조(보수의 주체) 시설물의 보수주체는 위원회로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제17조(보수비의 확보) ① 군수는 소요 보수사업비와 관련된 예산을 매 회계년도에 반영할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수비를 기금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보수비 충당을 위하여 기금을 확보코자 할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보수사업의 추진) ① 보수사업 추진은 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보수사업의 필요성, 보수비등)에 대하여 사전에 읍·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읍·면장 경유 군수에게 제출 지원요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한다.

④ 위원회는 보수사업을 완료할 때에는 보수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읍·면장 경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지도

제19조(교육) 읍·면장은 년 1회이상 위원장과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① 읍·면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매분기 1회이상, 방역상 필요시에는 주 1회이상 시설 위생관리 지도원으로 하여금 환경조사등의 실시를 확인하고 필요한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 각항의 행정지도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1조(회계년도) 위원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22조(예산편성) 위원회의 예산은 연도 개시 30일 이전에 편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읍·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결산보고) 위원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전년도의 예산 집행 및 결산내역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서류비치) ①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예산 및 결산서

3. 회의록

4. 점검기록부

5. 비품대장

6. 관리대장(시설에 한하여 별표3의 서식에 의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장부중 제1호내지 제4호의 비치 기간은 최초 작성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5조(운영규칙) 등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은 이 조례에 의거 설치된 것으로 본다.

청양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청양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를 삭제한다.

안 제15조를 제14조로 한다.

안 제16조를 제15조로 한다.

안 제17조를 제16조로 한다.

안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안 제19조를 제18조로 하고 동조중 “읍·면장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안 제20조를 제19조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읍·면장은”을 “군수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위 각항의 행정지도 및”을 “제2항에 대한”으로 한다.

안 제21조를 제20조로 한다.

안 제22조및 제23조를 삭제한다.

안 제24조를 제21조로 한다.

안 제25조를 제22조로 한다.

마. 靑陽郡郡民會館設置運營및使用料徵收條例廢止條例案

○ 提出年月日：1995. 4. 14 ○ 提出者：靑陽郡守

○ 提案理由

靑陽郡 郡民會館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靑陽郡 郡民會館의 設置運營 및 使用料 徵收條例가 1990年 4月 4日 制定 시행되어 왔으나 靑陽郡文化體育센터건립으로 郡民會館이 撤去되므로 동 조례의 존속사유가 소멸되어 본 條例를 廢止코자 함.

○ 處理結果

本會議 審議結果 原案대로 可決하여 1995. 4. 20. 執行機關에 移送하였다.

바. 靑陽郡屠畜場設置運營條例廢止條例案

○ 提出年月日：1995. 4. 14 ○ 提出者：靑陽郡守

○ 提案理由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規程에 의거 靑陽郡屠畜場의 設置가 1995. 1. 1일자로 忠淸南道知事로부터 허가 취소됨에 따라 本條例의 존속이 불필요하여 廢止코자 함.

○ 處理結果

本會議 審議結果 原案대로 可決하여 1995. 4. 20. 執行機關에 移送하였으며 午後 4時 21分 散會하였다.

3. 第3次 本會議

1995年 4月 19日 午前 10時에 開議된 第3次 本會議에서는 郡政에 관한 質問이 上程되었다.

가. 郡政에관한質問

議員別 議政活動 遂行時 제기된 事項이나 郡政에 관한 疑問事項에 대하여 李起甲議員, 趙炳安議員, 韓鐵熙議員이 質問하고 이에 대하여 執行機關의 해당 室課長이 答辯하였으며 質問內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議員別 質問 要旨 ◆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該 當 室 課
이 기 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는 자치단체의 법률과 같은 것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입법예고 및 공포는 주민다수가 알수있도록 하여야 할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예고나 조례공포시 효력을 갖게되는 시점은 언제 부터이고 그 요건은 무엇인가? • 관보처럼 군 공보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은? ○ 경지정리사업은 농업기반시설 사업으로 조속히 마무리 하여야 할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의 전망과 계획을 설명 하고, • 사업착수에 따른 순위결정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답변바람. ○ 금년도 전국적으로 계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한해 대책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것으로 하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군에서도 한해 대책을 위한 사업비가 투자되었는 지? •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그 구상을 설명바람. ○ 우리군의 유일한 세입원인 골재채취 사업에 있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년도 실적과 95년도의 계획은? • 94년도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와 군에서의 판촉 	<p>기 획 실</p> <p>건 설 과</p> <p>"</p> <p>"</p>

質問議員	質問要旨	該當室課
이 기 갑	<p>실적, 그리고 95년도 판촉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재판매 여건이 나빠 판매가 저조한 신흥골재장을 다른곳으로 이전 또는 폐쇄시킬 용의는? ○ 공설운동장 시설지에 대한 조경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 또한 미래지향적인 수종배치등 식재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 94년도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와 군에서의 판촉실적, 그리고 95년도 판촉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재판매 여건이 나빠 판매가 저조한 신흥골재장을 다른곳으로 이전 또는 폐쇄시킬 용의는? ○ 건조한 봄 기후로 인한 산화발생이 계속되고 있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도 지금까지의 원인별 산화발생 현황을 제시하기 바라며 • 산화방지를 위한 계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산화발생시 진화할 수 있는 진화장비 확보상황과 활용실태는? ○ 그동안 분뇨처리장에서 방류하는 오수가 지천 오염을 가중시켜 왔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 신설한 분뇨처리장의 운용실태와 분뇨처리능력 및 성능은? ○ 간이급수시설현황과 관리상태 및 앞으로 신설, 보수 계획은? ○ 쓰레기처리를 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 이는 군에서 	<p>사회진흥과</p> <p>건설과</p> <p>산림과</p> <p>환경보호과</p> <p>사회과</p> <p>환경보호과</p>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該 當 室 課
이 기 갑	<p>주민에 대한 봉사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별 쓰레기장 확보계획과 • 광역쓰레기장 설치계획 및 방안을 답변바람. 	
조 병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군수 취임이후 선거기간중 남발된 공약의 이행, 선거운동자들에 대한 이권특혜, 재선을 위한 무모한 투자와 인기위주의 사업이행, 선거공신들에 대한 특채를 위한 일용직, 기능직 특채요건의 기술, 전문직 공무원들을 증원시키는등 군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할 우려가 있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만한 재정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가? •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사전 조치사항은? ○ 일정액이상 군비가 투자되거나 중기계획에 어긋나는 사업계획은 사전에 군의회의 승인을 받은후 대외적으로 건의등을 할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과 제도화 대책을 제시바람. ○ 공무원해외연수 추진 계획에 의하면 금년에 17개 분야에 총 42명이 9,500만원을 들여 해외연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별로 구체적인 연수계획을 제시하고 금년에 이처럼 해외연수를 급증시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 93~95년간 기시행된 공무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p>기 획 실</p> <p>”</p> <p>내 무 과</p> <p>”</p>

質問議員	質問要旨	該當室課
조 병 안	<p>를 제출바라며 군 정책에 반영시켜 활용된 실적은?</p> <p>○ 최근 소값 동향을 보면 지난해 동기대비 28%이상 상승하고 있다고 보는데 10년전에 있었던 것과 같은 소값 파동이 우려됨. 소값파동 재연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p> <p>○ 의료원의 진료부분만큼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사명감이 고취되고 진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공사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진료경영 분석이 가능하도록 진료부문에 한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경영쇄신을 도모할 용의는?</p> <p>○ 94년도중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과 이장업무에 대한 보상을 보전하는 의미에서 성적이나 타 장학금 수혜와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p> <p>○ 수정지구 경지정리사업과 병행되고 있는 하천제방의 높이가 12m에 이르고 있는데도 벽면 보호시설을 하지 않고 있어 향후 제방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바 이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p> <p>○ 농촌지도소의 예산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예산액 현황과 국·도·군비 부담비율은? • 산업과와 중복되지 않는 업무와 이에따른 예산액 현황에 대하여 </p> <p>○ 농기계순회수리는 농민들의 농기계 수리 불편을 해소시켜주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그 규모가</p>	<p>산 업 과</p> <p>보 건 의 료 원</p> <p>내 무 과</p> <p>건 설 과</p> <p>농 촌 지 도 소</p> <p>"</p>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該 當 室 課
조 병 안	<p>크지 못해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품을 다양화하고 기술자를 보강하여 농기계 순회수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농기계 순회수리를 확대할 용의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진단실의 현황 및 진료실적과 ○ 조직배양 실시 현황과 배양실적을 제시바람. 	농촌지도소
한 철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10월에 이루어진 읍면계장 및 부면장 인사는 생활 근거지를 무시한채 타읍면으로 전보되어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음. 이들을 원대 복귀시키는 인사를 단행할 용의는 없는가? 또 군청에 오래 근무한 직원들의 타시군, 또는 읍면으로의 전보조치할 용의는? ○ 제방의 높이가 12m에 이르고 있는데도 벽면 보호시설을 하지 않고 있어 향후 제방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바 이의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 읍면직원의 군 전입기준은 무엇인가? ○ 읍면 6급 직원중에는 유능하고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군본청 전입이나 승진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이유는? ○ 군본청 6급 결원에 일정비율을 이들에게 주거나 군·읍·면 6급간 순환보직할 용의는? ○ 민선군수 취임후 읍면장 직위가 실과장이 불이익하게 인사조치되는 곳으로 전락될 우려가 많은데 6.30 이전에 읍면장등 임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조례화할 용의는? 	<p>내 무 과</p> <p>건 설 과</p> <p>내 무 과</p> <p>"</p> <p>"</p> <p>"</p>

質問議員	質問要旨	該當室課
한철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진후보자 작성기준과 방법 및 관리운용은 어떻게 하는가? ○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94. '95 운영현황을 제출바람. ○ 소류지, 양수장, 하천보등 군에서 시공 또는 지원한 농업용수시설의 사용료등이 형평을 기하지 못하여 주민의 불만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보, 소류지, 양수장등의 공과금(하천 사용료)부과 현황을 제출하고 하천보에 대한 공과금을 폐지할 용의는? ○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지 4개월이 되어가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주민들의 불참으로 규격봉투의 미사용등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량제이후 월별 쓰레기 배출량과 이에따른 분석은? • 쓰레기 배출량 증가에 따른 우리군의 실정과 이에대한 대책은? •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를 가연성과 불연성의 분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발전대책은? •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의 방치와 이에대한 처리 및 개선대책은? • 재활용품의 수거실태와 수거된 재활용품의 활용은? ○ 칠갑산 터널입구에 조성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정상 노변에 주차하여 주차시설의 혼란과 노폭감소에 의한 사고위험마저 느껴지고 있는데 	<p>내 무 과</p> <p style="text-align: center;">"</p> <p>건 설 과</p> <p>환경보호과</p> <p>건 설 과</p>

質問議員	質問要旨	該当室課
한 철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활용을 위하여 취한 조치가 있다면 무엇이며 • 95년도의 주차장 활용실적은? • 개선방안은? ○ 자가용승용차와 더불어 우리 군에서도 교통체증이 나타나고 있는데 • 이에대한 체증지역별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특히 청양교 사거리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로폭이 좁아 교통체증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접촉사고 또한 자주 발생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 TV에 방영되고 있는 119 구조대의 활동상을 보면 그 역할과 공로가 지대하게 홍보되고 있는데 • 청양군에서도 활동한 실적이 있다면 사례를 소개하고 구조업무의 조직화, 과학화를 위한 군의 대책이나 지원계획을 제시하여 주기 바람. ○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군 행정이 주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군에도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의견이 어떠하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을 답변바람. 	<p>지역경제과</p> <p>민방위과</p> <p>가정복지과</p>

4. 第4次 本會議

1995年 4月 20日 午前 10時에 開議된 第4次 本會議에서는 계속해서 郡政에 관한 質問이 上程되었다.

가. 郡政에 관한 質問

第3次 本會議에 이어 繼續된 郡政에 관한 質問은 金翼東議員, 尹在淳議員, 尹采遠議員, 吳炯基議員, 崔柄佑議員 順으로 進行되었으며 質問內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議 員 別 質 問 要 旨 ◆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該 當 室 課
김 익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10월 1일자로 지정된 군민의 날은 지방자치를 유보시킨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발효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므로 자치시대에 맞지 않아서 재조정을 촉구한바 있는데 이의 추진상황은? ○ 청양군기 및 휘장을 자치시대에 걸맞도록 특색있게 그 규격과 모양을 재 제작할 용의는? ○ 노변에 설치된 간이승강장의 읍면별 설치현황과 앞으로의 설치계획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장 설치와 관련된 민원은 없었는지, 민원이 있었다면 어떤 내용인지? ○ 성수대교 붕괴이후 청양군에서도 각 교량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장평면 죽림리에 설치된 새마을 교량의 점검결과는? ○ 645호선(낙지-장평간)의 도로포장공사 준공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였으며 중추리(상추)의 암거등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바 조치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바람. ○ 장평면 분향리 하천사용료 부과현황에 관하여 소상하게 밝혀주기 바람. 	<p>문화공보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사회진흥과</p> <p>건설과</p> <p>사회진흥과</p> <p>건설과</p>
윤 재 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향장학생 선발 시행규칙 제6조에 우선순위가 제시되어 있는데 조례의 목적과 규칙에 맞지 않는 순위를 작성해서 보다 성적이 뛰어나고 앞날에 인재가 될수 있는자를 탈락시킨 일이 있는가? 앞으로 개선대책은? ○ 지방도 645호와 연계되는 금강교 가설계획은? 	<p>기획실</p> <p>건설과</p>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該 當 室 課
윤 재 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도 645호는 낙지터널이 개통되면 부여군과 연결 되는 중요한 도로이므로 금강교 가설과 터널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 금강제방의 안전성 및 보강사업계획은? • 도에서 추진중인 금강종합개발계획의 추진전망은 이 계획에 의거 금강제방보수가 포함되고 있는지, 제방의 위험도는 어떠한지 제방보강사업 추진계획은? ○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 양수장, 집수암거 대형관정은 비록 군에서 보수하고 재정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민들에게 부담이 크므로 농지개량조합 이관을 추진할 용의는? ○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되어 오히려 포장순위가 뒤로 밀려난다는 주민불만이 있는바 승격 현황과 포장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p>건 설 과</p> <p>”</p> <p>”</p>
윤 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면 화암리 일대에 조성한다는 도축장 이전사업은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종축장이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은? ○ 청양읍 공용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홍성군은 로변과 하상에 공용주차장을 개설하여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구청사내도 주차료를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 청양읍 간선도로 하상복개지의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공용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인가? ○ 본의리 소류지제방에서 누수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 	<p>산 업 과</p> <p>지역경제과</p> <p>건 설 과</p>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該 當 室 課
윤 채 원	<p>데 현재 군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답변바람.</p> <p>○ '94 가을착수경지정리 추진은 어떠하며 금년 영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가?</p> <p>개소별 추진상황 제출바람.</p> <p>○ 목면 지곡리와 화양리를 연결하는 교량은 교량폭이 좁고, 낡고 난간이 부실해 매우 위험하고 교량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급하게 재 가설할 필요가 있는데 추진계획은 어떠한가?</p>	<p>건 설 과</p> <p>”</p>
오 형 기	<p>○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인 전 문대학을 97년 3월에 개교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년초에 보고했는데 현재 추진성과는?</p> <p>○ 정산면 역촌1리 지역은 사실상 주택지인데다 녹지지역으로 되어 주민불편이 큼.</p> <p>정산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용의는?</p> <p>○ 자치경영사업으로 칠갑산 생수를 개발하여 세수를 확충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성과는?</p>	<p>기 획 실</p> <p>도 시 과</p> <p>기 획 실</p>
최 병 우	<p>○ 공명선거대책 추진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명선거 실시의 구체적인 방안? •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인력 조정계획은? • 기권방지 및 무효투표 방지대책? • 유권자의 연령별 분포 • 문맹퇴치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 • 공명선거대책 상황실의 운영실적은? <p>○ 70년대초부터 국공유임야를 산림계와 소유자 또는 관</p>	<p>내 무 과</p> <p>산 림 과</p>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該 當 室 課
최 병 우	<p>리청간에 분수계약을 체결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소득원 사업을 시행한바 있는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년도별 분수계약 체결현황? • 시행한 사업의 종류와 투자금액? • 현재의 관리실태와 분수수익금의 수지현황? <p>○ 지난 4월 6일 오전 7시 KBS 뉴스시간에 남양면 구봉광산 폐광촌에 야적된 폐광석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되고 농작물에도 적지않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으며 약 1주일 전에도 같은시간 같은내용이 MBC에서도 방송한바 있어 오늘날 범국민운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전국 제1의 청정청양건설의 실천의지가 무색케 되었는데 그 진원은 어디에 있으며 실상은 어떠한 상황이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p> <p>○ 시내버스는 수많은 산간오지 및 서민들의 유일한 교통 수단이므로 이를 조정함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지난 4월 1일부터 통용케된 시내버스요금 조정이 불합리하여 물의가 야기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상요인은 무엇이며 • 인상폭은 얼마나 되는가? <p>○ 오지지역 교통편익증진, 관광지 관광객 편의도모, 기업체 종사원에 대하여 공영버스운행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여부와 기대효과는?</p> <p>○ 장곡사 주차장에 매점을 설치 임대하여 군수익을 증대</p>	<p>문화공보실</p> <p>지역경제과</p> <p>"</p> <p>지역경제과</p>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該 當 室 課
최 병 우	<p>시킬 방안이나 계획은 없는지?</p> <p>○ 내고장 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주유소와 협조, 사은품으로 특산품을 증정 홍보한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은?</p> <p>○ 칠갑산의 얼굴인 자연휴양림 휴식공간이 주민정서 함양에 지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수원부족 및 시설이 미흡하여 날로 이용객이 줄고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p>	<p>지역경제과</p> <p>산 립 과</p>

나. 會議錄署名議員選出

第33回 會議錄 署名議員은 金翼東議員, 吳炯基議員이 選出되었으며 午後 4時 22分 散會하였다.

第3節 第34回 臨時會

第34回 靑陽郡議會(臨時會)는 趙炳安議員外 4人으로부터 集會要求가 있어 地方自治法 第39條第2項의 規程에 의하여 開會되었다.

1. 第1次 本 會 議

1995年 5月 26日 午後 3時에 開議된 第1次 本會議에서는 第34回 靑陽郡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件, 靑陽郡稅條例中改正條例案外 條例案 3件, '95公有財產管理計劃變更의件, 靑陽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撤回同意의件이 上程되었다.

가. 第34回靑陽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第34回 靑陽郡議會 臨時會의 會期는 5月 26일부터 5月 29일까지 4일간으로 할것을 議決하였다.

◆ 第34回 青陽郡議會(臨時會)議事日程 ◆

月 日	次 數	附 議 案 件	備 考
1995. 5. 26 (金) 15 : 00	1	開 會 式	
		1. 第34回青陽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青陽郡稅條例中改正條例案 3. '95公有財產管理計劃變更의件 4. 青陽郡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青陽郡污水糞尿및畜産廢水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青陽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撤回同意의件 7. 青陽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5. 27. (土) 10 : 00	2	1. 一般案件處理 2. 95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5. 28. (日)		公 休 日	
5. 29. (月)	3	豫 決 特 委 運 營	
		1. 95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	

나. 青陽郡稅條例中改正條例案

- 提出年月日 : 1995. 5. 24 ○ 提出者 : 青陽郡守

○ 提案理由

地方稅法の改正에 따라 靑陽郡稅條例中 관련규정을 이에 일치시키므로써 郡稅業務遂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條例運營을 원활히 하기 위함.

○ 處理結果

本會議 審議結果 原案대로 可決하여 1995. 5. 27. 執行機關에 移送하였으며 上程된 條例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청양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중 “납부 또는 납기한의”를 “기한의”로 하며 “납기한”을 “기한이 만료되기 전”으로 한다.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된날의 익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수 있다.

제3항중 “납기한의”를 “기한의”로 하며, “납기한의 연장기한내”를 “연장된 기한내”로 하며, “납기한을”을 “다시”로 한다.

제5항중 “납기한”을 “신고납부기한”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 만료된 때부터 징수한다.”를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 : 1, 000원
2. 법인

구	분	세	율
자본액 또는 출자금액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법인으로서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법인		50,000원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 제목중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를 “비과세 적용자”로 하고 내용 “법 제184조,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자”를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자”로 하고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9조의 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관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적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관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1조중 “법 제202조제1항”을 “법 제9조2”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의 제목 “감면결정 통지”를 “비과세결정 통지”로 하고 내용중 “제29조내지 제32조”를 “제29조내지 제31조”로 한다.

제49조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관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관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법234조의12내지 제234조의14”를 “법 제234조의12”로 하고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제53조의 제목중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를 “비과세 적용자”로 하고 내용중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한다.

제54조중 “법 제238조의2”를 “법 제238조의2, 법 제279조, 법 제290조제1항”으로 하고, “비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제63조의 제목중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를 “비과세 적용자”로 하고, 본문중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 '95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의件

- 提出年月日 : 1995. 5. 24 ○ 提出者 : 靑陽郡守
- 提案理由
 -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 사유건물이 있는 부속토지를 연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
 - 칠갑지구농업용수 개발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 주체인 농지개량조합에 편입부분을 매각
 - 장평면 복지회관 광장 조성을 위한 인접 사유지 매입
- 主要骨子
 - 공유지 매각

- 淸양읍 교월리 203-12	309㎡	}	사유건물이 있는 부속토지
- 大치면 대치리 1-6 295중	189㎡		
- 南양면 구룡리 75-15	237㎡		
- 比봉면 녹평리 71-6	117㎡		
- 南양면 대봉리 82-2, 4, 5, 7번지	1,632㎡	}	농경지
- 木 面 新흥리 204-2	450㎡		
 - 칠갑용수개발사업 지구 편입토지 매각
 - 大치면 광대리 산 11-3 11,353㎡중 2,246㎡
 - 大치면 광대리 산 10-1 206,897㎡중 4,824㎡

- 대치면 광대리 산 14 51,098㎡중 3,528㎡
- 대치면 광대리 195 6,308㎡중 2,261㎡
- 장평면 복지회관 광장 부지매입
- 장평면 중추리 525-6번지 488㎡중 350㎡
- 장평면 중추리 520-1번지 79㎡
- 장평면 중추리 524번지 1,344㎡중 100㎡

○ 處 理 結 果

本會議 審議結果 原案대로 可決하여 95. 5. 27. 執行機關에 移送하였다.

라. 靑陽郡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 提出年月日 : 1995. 5. 24 ○ 提出者 : 靑陽郡守

○ 提 案 理 由

-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事項에 대하여 전문 보완하고
- 廢棄物關聯條例가 靑陽郡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 靑陽郡廢棄物過怠料賦課·徵收에관한條例, 靑陽郡一般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등의賦課·徵收에관한條例의 3件이었던 것을 “靑陽郡一般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로 改正·統合하고자 함.

○ 處 理 結 果

本會議 審議結果 修正可決하여 1995. 5. 27. 執行機關에 移送하였으며 上程된 條例案 및 修正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개정조례안

청양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양군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이라 함은 법정리 단위로 가구수가 50호미만인 지역과 산간·오지등으로서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군 전역을 말한다. 다만, 다수인이 모이는 도립공원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해당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다.
2. “대청소”라 함은 일정 일시에 주민이 참여하여 일제히 불결한 지역을 청결하게 청소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이하“일반폐기물”이라 한다)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퇴비화한 음식쓰레기,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영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매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5.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일반폐기물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일반폐기물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일반폐기물의 적정처리) 군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예산등을 확보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의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대청소 실시) 군수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주민 청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수시로 대청소를 실시할수 있다.

제2장 일반폐기물 처리등

제5조(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를 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때에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와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수집·운반·처리대상 폐기물의 성상 및 물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5.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6. 차고지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처리업자와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을 할수 있다.

⑤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읍·면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하여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계약에 따른 물량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1일 배출량을 기준하

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에 의하여 산정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분리보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5.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6. 차고지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처리업자와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을 할수 있다.

⑤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읍·면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하여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계약에 따른 물량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에 의하여 산정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분리보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일반폐기물보관시설등의설치및관리)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 편의성, 일반폐기물 발생량과 성상,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설치된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생활환경 및 교통등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수 있으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설치자와 동의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수 있다.

③ 도로변에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표시판을 설치하는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① 군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일반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단, 일반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사무실 위치를 군의 관할구역내에 두어야 한다.

② 군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1항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의무)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처리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능력 향상과 군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 1회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적정여부
3. 기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등

제3장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

제11조(적용범위) ① 일반폐기물중 법 제14조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12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

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및 퇴비화한 음식쓰레기는 군수가 지정하는 일시에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 2의 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자는 군수가 제작 판매하는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스티커(이하“스티커”라 한다)를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권을 구입하여 배출코자 하는 대형폐기물에 부착후 배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 요령등을 정할수 있다.

제13조(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등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한 경우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저밀도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과 붉은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 4와 같다.

제15조(쓰레기봉투와 스티커의 제작등) ① 쓰레기봉투와 스티커는 군수가 제작

한다.

②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후면에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광고문을 게재할 수 있다.

1. 청양군의 상표
2. 봉투용량
3. 용도
4. 주의사항
5. 발행기관명 및 연락처
6.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등 쓰레기봉투와 스티커의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

⑤ 군수는 스티커를 제작함에 있어 공인과 발행번호를 제외하고 제작후 수요를 판단 공인날인과 발행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하며 스티커의 제작사양은 별표5의2와 같다.

제16조(쓰레기봉투와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와 스티커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며, 군수가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쓰레기봉투와 스티커를 판매할수 없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시장의 신청 또는 군수의 판단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판매업자가 쓰레기봉투 또는 스티커 공급을 받고자 할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신청을 받은 경우는 대금을 징수하고 공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급수불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와 스티커 판매인 지정신청 등) ① 쓰레기봉투와 스티커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이하“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하는자는 5제곱미터이상의 점포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시장번영회, 새마을부녀회, 리개발위원회,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점포를 소유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여도 지정할수 있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예정판매소의 약도

3. 인감증명서

③ 군수는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을때에는 15일 이내에 쓰레기발생 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판매인의 지정을 할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판매소의 변경 신고등)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를 하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소재지 변경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재교부 하여야 한다.

제19조(판매인 지정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자로 지정할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3. 판매인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제20조(봉투 및 스티커 판매자 준수사항) 판매인은 쓰레기 봉투 종류와 스티커의 금액권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출된 봉투 또는 스티커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볼수 있는곳에 별표 6의 판매소 지정 표지판을 제작 부착하여야 한다.
2. 봉투판매가격과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판매자는 군수가 공급하는 봉투 및 스티커 이외의 봉투 및 스티커를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봉투 및 스티커를 판매해서는 안된다.
4. 쓰레기 배출자가 이사등 정당한 사유로 일반용봉투와 스티커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5. 기타 봉투판매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판매소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판매소 지정을 받은후 25일 이내에 판매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2. 20일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3. 제20조 규정에 의한 판매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의거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 및 퇴비화한 음식쓰레기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7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별표8과 같다.

제23조(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판매업자가 봉투와 스티커의 공급을 신청할 경우 군수는 제22조제1항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별표9의 판매자 이익금을 제외한 쓰레기봉투와 스티커 대금을 부과·징수하고 봉투와 스티커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2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주민과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도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제2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장 가족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자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월 신청하여야 한다.

제4장 과 태 료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28조(의견진술등) 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제29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30조(과태료 부과기준)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별표 10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부과대상 행위가 다른 법률에서도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만을 적용한다.

제3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을 제기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관할 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3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청양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34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35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제36조(준용규정)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조례) 청양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및 청양군일반폐기물 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③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받은 쓰레기봉투 판매업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④ (수수료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및 과태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청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청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6조제1항제2호중 “새마을부녀회장 가족”을 “새마을부녀회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마. 靑陽郡汚水糞尿및畜産廢水過怠料賦課徵收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 提出年月日：1995. 5. 24 ○ 提出者：靑陽郡守
- 提 案 理 由
 - 靑陽郡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 및 靑陽郡廢棄物收集手數料等徵收條例에 혼재되어 있는 汚水·糞尿관련 條項과 靑陽郡 汚水·糞尿및畜産廢水過怠料賦課徵收에관한條例로 改正 통합하여 管理에 注意를 도모코자 함.
- 處 理 結 果

本會議 審議結果 原案대로 可決하여 1995. 5. 27. 執行機關에 移送하였으며 上程된 條例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수 있도록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군수는 관할구역안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하고 처리방법의 개선등을 통하여 수질오염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처리 기본계획) 군수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마다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2장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제5조(정화시설의 내부청소) ① 군수는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이하“정화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년 1회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정상가동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은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3.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6조(정화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예정된 내부청소 시기의 1개월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년 1회이상 청소 의무사항등을 명시한 내부청소 안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기한까지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수 있다.

제7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분뇨수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할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유선통지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분뇨처리 의무제외지역) 법 제19조제2항 및 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분뇨수거·운반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및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함에 있어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분뇨수집, 운반, 처리나 정화조의 청소를 업으로 하는자 (이하 “분뇨관련 영업자”라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수 있다.

②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때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춘 분뇨관련 영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차고지 및 주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 계약할수 있다.

⑤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읍·면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하여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제3장 가축사육의 제한등

제10조(가축사육의 제한등) ①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구분 지정한다.

② 전부 제한지역안에서는 축산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2마리 이하의 애완 및 방범용 개, 사슴등 동물과 10수이하의

애완용 소조류나 꿀벌은 예외로 한다.

③ 일부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농경용 및 농가 부업용의 1마리의 소, 말, 양, 돼지 5수이하의 가금류
2. 학교 및 시험 연구기관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축
3.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한 계류장

④ 가축 사육의 제한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축사의 이전등 조치명령)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소음, 해충, 악취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이전 및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수 있다. 다만,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사이전을 할 경우에는 최저의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

제4장 분뇨관련 영업허가 등

제12조(분뇨관련 영업허가등) ① 군수는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량과 기존 분뇨관련 영업자의 수집·운반능력을 고려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단 분뇨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주소와 사무소를 군의 관할구역내에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제한할수 있다.

제13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① 군수는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할 경우 청소직후 그 정화시설이 규칙 제12조, 제14조 및 제41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정화시설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분뇨관련 영업자는 청소작업 일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청소 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영업자의 지도감독) 군수는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분뇨처리능력 향상과 주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적정여부
3. 기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등
4. 기타 분뇨수집·운반에 수반되는 업무등

제5장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제15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이하“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자”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터

4.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의 휴게소
 7.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9.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10.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11.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12. 기타 군수가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 제17조(설치기준)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전체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남자용 3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5개이상 또는 5인용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소변기를 설치할수 있다.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규모는 가로 85센티미터이상, 세로 115센티미터이상(양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130센티미터 이상)일것
 3. 수세식일것, 다만, 상·하수도 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 및 에어타월기(또는 롤러타월기), 10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할것.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하고 설치장소의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변기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6.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를 부착할것.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남자·여자 표지를 부착할것)

② 제1항의 시설외에 필요한 경우 신체 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수 있다.

제18조(위탁관리)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수 있다.

제19조(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곳은 예외로 할수 있다.

1. 화장실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비 누 (또는 액체 비누)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21조(유지·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것.
2.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을 즉시 정비하고, 내·외부는 년1회이상 도색할것.

제22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시설의 정비상황과 유지·관리 상황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화장실의 개방)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수 있다.

② 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화장실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제24조(시설점검)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17조, 제19조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 2회이상(상·하반기) 정기 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제25조(개선명령) 군수는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17조 제19조내지 제2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청결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수 있다.

제26조(개선명령의 이행기간등) ①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때에는 청결·도색 기타 경미한 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자에 대하여는 설치·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③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행서를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유료화장실 승인) ① 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수 있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시설 내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2. 전담관리인을 둘것.
3. 화장지, 비누, 수건(또는 에어타월기) 등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의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군수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28조(준수사항)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금액을 초과 징수하지 않을 것.
3. 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를 부착할 것.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6장 분노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

제29조(사용료의 징수) ① 분뇨처리시설의 사용료는 10리터당 10원을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하는자 및 대행업자로부터 징수하며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 수수료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군수가 징수하며 분뇨관련영업자와 대행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가 징수한다.

제31조(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장 과 태 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3조(의견진술등) ①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제34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진위를 조사확인한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 부과기준)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별표 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경우 하나의 부과대상 행위가 다른 법률에서도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만을 적용한다.

제3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관할 법원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의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법원의 결정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청양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3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제41조(준용규정) 수수료·사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조례) 청양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청양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③ (분노관련영업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허가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④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⑤ (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7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靑陽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撤回同意의件

- 提出年月日 : 1995. 4. 11 ○ 提出者 : 靑陽郡守
- 上程日字 : 1995. 4. 18 (第33回臨時會第2次本會議 : 審議保留됨)
- 撤回要求年月日 : 1995. 5. 20 ○ 撤回要求者 : 靑陽郡守
- 撤回要求理由

條例案 提出 이후 보건의료원가정간호계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과 地方自治團體長인 정무직 1명 증원등 추가 보완하여야 할 事項의 발생으로 撤回要求 함.

○ 處 理 結 果

本會議 審議結果 撤回許可기로 可決하여 1995. 5. 29. 執行機關에 撤回許可 하였음을 通告하였다.

사. 靑陽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提出年月日 : 1995. 5. 24 ○ 提出者 : 靑陽郡守
- 提 案 理 由

- 본격적인 地方自治時代를 맞아 지속적인 지방세수의 확보관리와 稅務行政 수행체계를 개선하여 地方稅政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기구인력을 정비 보강

하고

- 靑陽郡 衛生環境事業所 設置 및 보건의료원 가정간호계 신설, 地方自治團體長의 주민 직선에 따른 군수직급의 지방직화 計劃에 의하여 地方公務員으로의 정원채정과
- 정원의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議會事務課에 두는 公務員 定員을 靑陽郡 地方公務員 定員條例에도 規程하려는 것임.

○ 處理 結果

本會議 審議結果 原案대로 可決하여 1995. 5. 27. 執行機關에 移送하였으며 上程된 條例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198명”을 “199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4호 “226명”을 “221명”으로 하고 이를 제5호로 하며, 같은조 제3호 “6명”을 “16명”으로 하고 이를 제4호로하며, 같은조 제2호 “102명”을 “106명”으로 하고 이를 제3호로 하며, 같은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회사무과 : 11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군 본청 정원중 지방정무직 공무원 1명의 정원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第2次 本會議

1995年 5月 27日 午前 11時 05分에 開議된 第2次 本會議에서는 95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이 上程되었다.

가. 95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 提出年月日 : 1995. 5. 27
- 提出者 : 靑陽郡守
- 提案理由

1995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은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골재채취 전입금 수입의 발생, 담배판매세의 증대 및 군도포장 및 소하천 정비를 위한 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고 일용인부의 단가 인상등 필수경비의 변경사유 발생으로 편성하게 되었음.

○ 提案說明

企劃室長으로부터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提出에 따른 提案說明이 있었다.

나.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1995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審査를 위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構成하여 審査토록 하였으며 選任된 委員은 다음과 같다.

◆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 ◆

崔柄佑, 吳炯基, 尹采遠, 金翼東, 韓鐵熙, 趙炳安, 李起甲委員 (이상 7인)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995年 5月 27日 第34回 青陽郡議會 臨時會 第2次 本會議에서 構成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1995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5月 29日까지 2次에 걸쳐 審査하였다.

가. 第1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995年 5月 27日 午前 11時 21분에 開議된 第1次 豫決特委에서는 委員長 및 幹事選任의件,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會期決定의件이 上程되었다.

1) 委員長選任의件

青陽郡議會委員會條例 第3條의 規程에 의하여 연장위원인 金翼東委員의 司會로 호선에 의하여 韓鐵熙委員이 委員長으로 選任되었다.

2) 幹事選任의件

委員長選任에 이어 幹事에는 李起甲委員이 추천 選任되었다.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期決定의件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期는 5月 27일부터 5月 29日까지 3日間 運營키로 하였다.

나. 第2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995年 5月 29日 午前 10時에 開議된 第2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는 1995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審査와 審査報告書採擇의件이 上程되었다.

1) 1995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995年度 第1回追加更正豫算案은 1995年 5月 27日 青陽郡守로부터 提出되어 동일자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되었으며 提出된 豫算案의 概要는 다음과 같다.

◆ 1995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概要 ◆

<豫算案規模>

(單位：千원)

區 分	豫 算 額 %		'95當初豫算額%		增 減 %	
計	63,105,312	100	60,041,375	100	3,063,937	100
一 般 會 計	51,872,546	82.2	49,500,098	82.4	2,372,448	77.4
特 別 會 計	11,232,766	17.8	10,541,277	17.6	691,489	22.6

<歲入歲出規模>

(單位：千원)

區 分	豫 算 額	'95當初豫算額	增 減	
합 계	63,105,312	60,041,375	3,063,937	
歲 入	지 방 세	3,583,992	3,560,992	23,000
	세 외 수 입	15,539,670	13,680,577	1,859,093
	지 방 교 부 세	21,272,000	21,272,000	0
	지 방 양 여 금	4,400,608	3,448,302	952,306
	보 조 금	17,704,719	17,796,464	△ 91,745
	지 방 채	604,323	283,040	321,283

區 分	豫 算 額	'95當初豫算額	增 減	
歲 出	인 건 비	9,673,541	9,586,882	86,659
	물 건 비	6,747,380	6,747,155	273,225
	경 상 이 전	6,753,289	6,607,808	145,481
	자 본 지 출	32,272,758	30,382,881	1,889,877
	용자·출자금	408,329	192,500	215,829
	내 부 재 원	2,021,575	2,116,233	△ 94,658
	내 부 거 래	3,205,829	2,767,918	437,911
	기 타	1,243,556	1,156,833	86,723
	예 비 비	779,055	756,165	22,890

○ 豫算案 審査

追加豫算案에 대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었으며 企劃室長으로부터
각항목별 설명과 이에 대한 質疑·答辯으로 審査가 進行되었다.

○ 審査 結果

豫決特委審査結果 特委 修正案으로 可決하였으며 修正案은 다음과 같다.

◆ 1995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修正案 ◆

○ 總 括

〈歲 入〉

(單位：千원)

會 計 名	團體長提出 豫 算 額 (A)	修 正 額		修 正 後 豫 算 額	修正比率 (B/A)%
		減 額	增額(B)		
計	63,105,312	—	—	63,105,312	
一般會計	51,872,546	—	—	51,872,546	
特別會計	11,232,766	—	—	11,232,766	

〈歲 出〉

(單位：千圓)

會計名	團體長提出 豫算額 (A)	修正額		修正後 豫算額	修正比率 (B/A)%
		減額	增額(B)		
計	63,105,312	25,000	25,000	63,105,312	
一般會計	51,872,546	25,000	25,000	51,872,546	
特別會計	11,232,766	-	-	11,232,766	

○ 削減額 調書

• 一般會計 (歲出)

(單位：千圓)

章		團體長 提出 豫算額	修正額		修正後 豫算額	修正理由와 內 譯
款	項		減額	增額		
合計		51,872,546	25,000	25,000	51,872,546	
일반행정비						
재무행정비	지방수입 관리	280,843	5,000 (5,000)		275,843	담배소비세징 수보상
지역개발비						
치수및하 수사업비	치수및하 수사업비	1,409,254	20,000 (20,000)		1,389,254	불량소하천정 비
지원및기타경비						
예비비	예비비	763,926		25,000 (25,000)	788,926	예비비

4. 第3次 本 會 議

1995年 5月 29日 午後 4時 45분에 開議된 第4次 本會議에서는 95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이 上程되었다.

가. 1995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 提出年月日 : 1995. 5. 27 ○ 提出者 : 青陽郡守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回附 : 1995. 5. 27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審査 : 1995. 5. 27~5. 29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審査報告

豫決特委 韓鐵熙委員長으로부터 1995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5月 27일부터 5月 29일까지 委員들이 審査한 結果 特委에서 修正案으로 可決하였음을 本會議에 報告하였다.

○ 處 理 結 果

本會議 審査結果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修正案대로 可決하여 1995. 5. 27. 執行機關에 移送하였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2차 예결특위내용 참조)

나. 會議錄署名議員選出

第34回 青陽郡議會(臨時會)의 會議錄 署名議員은 尹在淳議員, 尹采遠議員으로 選出되었으며 午後 4時 52分 散會하였다.